

서류 disclaimer_2022.10.27

구분	서류명	제출 조건
개인사업자	대표자 신분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분증(앞면) 정보 (마스킹 없이 제출) - 주민등록증 / 운전면허증 허용 ※ 주민등록증 미발급 미성년자 -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+주민등록등(초)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
		(공동대표자) 공동대표자 2 인의 신분증 제출
		(외국인 대표자) 아래의 항목 중 선택 제출 가능 - 외국인등록증 (앞뒷면 필수 제출) -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(앞뒷면 필수제출)
	사업자등록증 사본	- 마스킹 없이 제출
	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- 마스킹 없이 제출 - 발급 90 일 이내 ※ 사업자등록증명원 :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최신의 사업자 정보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명원을 제출바랍니다. (홈택스 > 민원발급 >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> 즉시발급가능)
영리법인(비상장)	사업자등록증 사본	- 마스킹 없이 제출
	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- 마스킹 없이 제출 - 발급 90 일 이내 ※ 사업자등록증명원 :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최신의 사업자 정보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명원을 제출바랍니다. (홈택스 > 민원발급 >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> 즉시발급가능)
	법인등기부등본	- 발급 3 개월 이내 (열람용 제출 불가) - 등기부등본 전 페이지 첨부
	주주명부	- 법인 인감날인 필수, 발급 3 개월 이내 - 주주명부 확인이 어려운 해외법인의 지사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.
영리법인(상장,금융회사)	사업자등록증 사본	- 마스킹 없이 제출
	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- 마스킹 없이 제출 - 발급 90 일 이내 ※ 사업자등록증명원 :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최신의 사업자 정보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명원을 제출바랍니다. (홈택스 > 민원발급 >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> 즉시발급가능)

	법인등기부등본	- 발급 3개월 이내 (열람용 제출 불가) - 등기부등본 전 페이지 첨부
비영리법인/기관/단체	고유번호증 사본	- 마스킹 없이 제출
	법인등기부등본	- 발급 3개월 이내 (열람용 제출 불가) - 등기부등본 전 페이지 첨부
	정관	- 법인인감날인 필수 - 설립목적의 확인 가능해야 함
	또는 출자자명부, 회칙, 규약, 당선증, 회의록 등	- 변경사항(상호명, 본점이전, 발행주식총수, 목적 등) 있는 경우, 최종 변경된 정관 첨부
정부기관(국가, 지자체, 관공서 등)	사업자등록증 사본	- 마스킹 없이 제출
	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- 마스킹 없이 제출 - 발급 90일 이내 ※ 사업자등록증명원 :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최신인 사업자 정보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명원을 제출바랍니다. (홈택스 > 민원발급 >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 > 즉시발급가능)
공동(개인사업자, 법인, 기관/단체, 정부기관)	공동대표 추가서류	- 위임장 - 인감증명서 - 개인사업자 : 공동대표자의 신분증(마스킹없이 제출) ※ 각자대표의 경우, 추가서류 제출 미해당

『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』 제 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 따른
고객확인 의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 중 이용자가
제공한 정보를 수집 및 확인할 수 있으며, 법령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이용합니다.